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3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처, 02-970-9114

전부개정 2020. 9. 4. 개정 2021. 2. 9. 학칙개정 2021. 10. 1. 개정 2022. 2. 7. 개정 2023. 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5조에 따라 계 약학과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개정 2021. 10.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학과" 란 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부· 학과를 말하며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가. "채용조건형" 이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재교육형"이란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사업주 제외)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다.
- 라.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하다.
- 2.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 제3조(계약의 주체) 이 규정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을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평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 등) ① 계약학과 등의 명칭, 학위과정명, 입학정원, 학위 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학정원 및 등록률 제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와 폐지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학과의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 ②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20
 -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 ④ 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요건)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 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2.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제6조(동일권역 및 이동수업) ① 본교와 산업체 등이 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산업체 등의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본교와 산업체 등과의 직선거리가 50km 이내인 경우를 동일한 권역으로보며,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 1. 복수의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과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 3. 기타 권역을 완화하여 설치 · 운영이 필요한 경우
 - ②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 2의 계약학과 설치·운영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미 설치되어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하다.
 - ③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참여한 다른 기업,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수 있다.
 - ④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 자 하는 경우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 ⑤ 제3항에 따라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 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 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 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 ⑥ 계약학과 학과장은 학생 입학 전에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 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절차)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계약학과 를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 2의 계약학과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할 경우계약학과 신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설 예정 4개월 전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협약서
 - 2.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 3. 교육과정
 - 4. 예산서, 운영계획서(5개년 학생모집계획 방안 필수 기재)
 - 5. 계약학과 강의운영계획서(전임교수 강의 비율 포함)
 - 6. 계약학과 참여교수 확보계획서

- 7. 계약학과 강의실 사용허가서
- 8. 학과회의록(학과 교수 동의)
- 9. 참여교수 소속학과 동의서
- 10. 해당 단과대학 교무회의 회의록
- 11. 해당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 ②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해 산업체 등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3. 설치 ·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시 조치사항
 -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의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대학장은 단과대학 교무회의에,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의 모든 서류에 대해 교무처장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교무처장은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등의 검토요청을 접수한 후에 별표 2의 계약학과 설치·운영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계약학과 신설 예정 2개월 전에 연구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학과 신설의 필요성(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검토)
 - 2. 학과의 정원(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검토)
 - 3. 교육과정(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검토)
 - 4. 교원확보율
 - 5. 공간활용 가능성
 - 6. 대학발전 연계성 및 지원내용 등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고시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5조제2 항의 권역제한 완화 등에 대해 교육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계약학과의 신설 예정 3개월 전에 연구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연구처장은 교무처장의 검토의견을 접수 후 계약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산학협정체결 여부
 - 2. 예산 및 운영계획
 - 3. 운영계약서(안)
 - 4. 전담직원의 채용 및 관리계획
 - 5.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기준 충족 여부
- 6. 교육과정과 협약업체의 업무연관성
- ⑦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관리위원회 심의 후 신설 예정 1개월 전에 산업체 등과 운영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협약서)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학과의 운영 등)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 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학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2018. 11. 28. 전에 설치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2018학년도 2학 기까지이며, 2019학년도 이후에도 운영을 하려면 산업체 등과의 설치·운영계 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계약학과의 운영 등에 관한 부서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처: 계약학과 등의 신설·폐지, 계약학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의 운영실태, 기타 계약학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2. 산학협력단: 산업체 등과의 협정 및 계약서 체결,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 3. 계약학과: 자체 계약학과운영위원회 운영, 교무·학사·장학 및 학생선발,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무처 및 해당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등재, 계약학과의 교무·학사·장 학 및 학생선발 감독
 - 5. 입학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⑤ 계약학과 학과장은 계약학과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 ⑥ 전담직원에 대한 임용절차 및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계약학과관리위원회

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①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전담직원의 계약기간 은 당초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학과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0조(계약학과관리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신설·폐지, 계약학과 전담직원의 임용절차, 보수 기준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계약학과의 신설 또는 폐지
 - 2. 계약학과 직원의 임용절차
 - 3. 계약학과 직원의 보수기준
 - 4. 계약학과 강사료 및 책임시수 기준
 - 5. 계약학과 운영성과 평가
 - 6. 계약학과의 입학 및 학사관리
 - 7. 그 밖의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부처장, 전체 계약학과 학과장(또는 주임교수), 대학원과정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 ④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계약학과 학과장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2(계약학과별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별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의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계약학과 학과장(주임교수)은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 등의 관계자와 워크 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① 연구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등의 현황과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처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정보공시지침」 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처장은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신고 서식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다.
 - ④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폐지 사유 발생 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한다.
 - 1. 등록인원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지침에 정한 개설가능 인 원에 미달한 경우
 - 2. 계약업체의 사정에 의한 폐지
 - 3. 학교 또는 정부의 방침 등에 따른 폐지
 - 4. 매학기 계약학과 자체 실사점검 결과 2년 연속 부실운영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 연구처장은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신고 서식에 따라 폐지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입학 및 학사관리

- 제12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별 학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2.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제1 항 각 호를 충족하고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한 사람이어야하다.
 - ③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 ④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5조제2 항제2호의 형태로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직요건을 따른다.
 - 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직원에 한해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 ⑥ 산업체가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소속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입학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⑦ 연구처장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 다.
- 제13조(학생선발 및 학습구분)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 기준을 제시할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체적인조건은 본교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 1. 서류전형
 - 2. 필답고사
 - 3. 면접고사
 - 4. 실무경력
- ③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 ④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수 있다.

- 1.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 2.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 3. 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4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교무처장은 전임교원이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무처장은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가 계약학과 학과장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채용형 계약학과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한 학생을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산업체 등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 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이하

- "학칙"이라 한다) 및 학사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받아야 한다.
- ③ 계약학과의 원격수업, 이동수업, 현장실습 및 현장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 학생의 수강신청, 성적, 수업일수, 교양 및 전공 등 이수요건, 학점인정, 졸업필요학기, 계절수업수강, 졸업종합시험, 휴·복학, 제적, 학사경고 등 모든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계약학과 학과장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에 통보한다.
- 제17조(졸업이수학점) 계약학과 학생의 학위과정별 졸업이수학점은 학칙 및 학사 관계 규정에서 정한 졸업이수학점으로 한다.
- 제18조(조기졸업)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신입학은 7개 학기, 편입학은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 제15조에서 정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모든 교과목을 합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A°(평점 4.0) 이상인 사람은 본인이원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졸업 할 수 있다.
 - ②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의 조기졸업은 학칙 및 소속 대학원의 학사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9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 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폐지 전 계약학과로 한다.

-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따라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개정 2022.2.7.〉
-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개정 2022.2.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2.7.〉

제4장 회계 관리

- 제20조(회계 관리 등) ① 회계 관리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 ② 계약학과 운영경비로 구입한 기자재, 비품 및 도서 등은 구입과 동시에 본 교 재산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 제21조(등록금 및 운영경비) ①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은 학기별로 정해진 등

록금(입학금, 수업료)에 따라 징수하며, 산업체 부담분과 학생 부담분을 분리하여 고지한다.

- ②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은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부담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7조의 공동계약에 따른 국가·지방자 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③ 제3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 ④ 연구처장은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22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7조에서 정한 3자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설 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 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직접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 등이 부담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산업체 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본교와 산업체 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부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물 부담을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현물부담금의 금액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연수와 별표 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사용시간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운영

- 제24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직업교육훈련과정생의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 및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② 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에 의하되,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 등 교육여 건과 사회적 인력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으로 정한다.

- ④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학칙 및 학사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제26조(세부지침) 계약학과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558호, 2020. 9.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80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계약학과의 명칭 등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2호, 2022.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1호, 2023.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학과의 명칭 등(제4조 관련)

구분	대학(원)	계약학과명칭	학위 과정	입학 구분	학습 구분	입학 정원	학위종별
대학	공과대학	기계설비공학과	학사	편입학	야간	20	공학사
		건축기계설비공학과	학사	편입학	야간	40	공학사
	창의융합대학	반도체공학과	학사	편입학	야간	20	공학사
	산업대학원	공공관리 · 기술정책학과	석사	신입학	야간	15	공학석사(공공관리 · 기술정책)
		Al융합경영·정책학과	석사	신입학	야간	20	경영학석사
	주택도시대학원	SOC유지관리공학과	석사	신입학	야간	10	공학석사(SOC유지관리)
	철도전문 대학원	글로벌철도시스템학과	석사	신입학	주간	15	학술학위 : 공학석사
							전문학위 : 공학석사(글로벌철도시스템)
			박사	신입학	주간	9	학술학위 : 공학박사
							전문학위 : 공학박사(글로벌철도시스템)
		철도안전학과	석사	신입학	주간	40	학술학위 : 공학석사
							전문학위 : 공학석사(철도안전)
			박사	신입학	주간	5	학술학위 : 공학박사
							전문학위 : 공학박사(철도안전)
	IT정책전문 대학원	방 <u>송통</u> 신미디어정책학과 ·	석사	신입학		4	학술학위 : 정책학석사
					주간		전문학위 : 정책학석사(방송통신미디어정책)
			박사	신입학	주간	1	학술학위 : 정책학박사
대학원							전문학위 : 정책학박사(방송통신미디어정책)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환경융합학과	석사	신입학	주간	10	학술학위 : 공학석사, 경제학석사
							전문학위 : 공학석사(에너지환경융합학) 경제학석사(에너지환경융합학)
					주간	6	학술학위 : 공학박사, 경제학박사
			박사	신입학			전문학위 : 공학박사(에너지환경융합학) 경제학박사(에너지환경융합학)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석사	신입학		20	학술학위 : 공학석사
					주간		전문학위 : 공학석사(안전환경기술융합)
		과학기술정책융합학부 (공공기획재정학과, 에너지기술융합학과, 국방ICT·안전학과)	석사	신입학	주간	45	학술학위 : 경제학석사, 공학석사
							전문학위 : 경제학석사(과학기술정책융합), 공학석사(과학기술정책융합)
			박사	신입학	주간	15	학술학위 : 경제학박사, 공학박사
							전문학위 : 경제학박사(과학기술정책융합), 공학박사(과학기술정책융합)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기준

구분 기준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설치수	○학과(학부는 전공)별 소속 전임교원 수 비례설치(1개 기본) - 11명~20명 : 2개설치 - 21명~30명 : 3개설치 - 31명 이상 : 4개설치 ※ 전임교원 수는 4.1. 기준	○대학원별로 설치되 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프로그램수 초 과 금지	○ 대학원별로 설치되 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프로그램수 초 과 금지	○ 대학원별로 설치되 어 있는 학과수 초과 금지 ※채용조건형만 설 치 가능				
교원 확보율	○정규학생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출 한 교원확보율(계약학과 학생제외) : 전임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50%이상							
전임교수 참여율	○계약학과별 전임교수 5명 이상 참여 (단, 전임교원수가 10명 이하인 경 우는 1/3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수의 강의 담 당과목 기재)	○ 해당 학과(전공 또 는 프로그램) 전 임교수 1/2 이상 참여						
계약학과 입학정원	○재교육형: 해당학년도 전체(학부, 대학원) 입학정원의 20/100 ○채용조건형: 해당학년도 전체(학부, 대학원) 입학정원의 20/100							
최소개설 가능정원 (재교육형)	[대학] 입학정원 40명 이상/ 정원의 70% 이상 등록 [대학원] 입학정원 15명 이상/ 정원의 70% 이상 등록 ※ 입학정원 및 등록률 제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입학정원 및 등록률 제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폐지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학과의 경우 한시적기간(1년이내) 동안 예외로 한다.							
학과장 (주임교수) 임명	○해당 학과(학부는 전공)의 학과장(주 임교수) 또는 전임교원 겸임 원칙 ○소속교원 중 학과장이 추천한 사람 으로 대체 가능(학과회의록 붙임)	○해당 대학원학과(전 공)의 주임교수 또 는 전임교원 겸임 원칙	○해당 대학원 학과 (전공)의 주임교수 또는 전임교원 겸임 원칙	○해당 대학원 학과 (전공)의 주임교수 또는 전임교원 겸임 원칙				
등록 금 책정	○ 등록금 (정규학생 1개 학기 기준 이상)	○등록금 (정규학생 1개 학기 기준 이상)	○ 등록금 (정규학생 1개 학기 기 준 이상)	○등록금 (정규학생 1개 학기 기준 이상)				

[※] 계약학과 입학정원 중 재교육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채용조건형의 최소개설가능정원은 재교육형 최소개설가능정원의 5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호
수 료 증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과정에서 정해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박사 ○ ○
위의 인정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박사 ○ ○